

<p>2. 상정일자 ○주택국(총 4건) 제8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95.9.21) 상정, 심사 ○도시계획국(총 22건)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9.22) 상정, 심사</p> <p>3. 제안이유 및 요지 ○제안설명자: 주택국장 양갑(주택국소관 4건) 도시계획국장 최재범(도시계획국소관 22건)</p> <p>가. 제안이유 별첨내용 나. 주요요지 안건별내용 별첨</p> <p>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안건별내용 별첨</p> <p>5. 심사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 절차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결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 이익에 관계되는 시설에 대한 9건에 대하여 시장 결정(지정)안대로 동의 처리토록 하였고, ○17건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 후 처리키로 하고 보류하였음.</p> <p>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안건별 심사결과</p> <p style="text-align: center;">시 결정(지정)안과 의견이 같음 (9건)</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 <td>의안 번호</td> <td>19</td> </tr> </table> <p>1. 건 명 : 신공덕 제3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2. 제안이유 : 신공덕 제3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p>	의안 번호	19	<p style="text-align: center;">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 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 ○위치: 마포구 신공덕동 2-264번지 일대 ○내용 • 면 적 : 14,569㎡(국·공유지 4,829㎡, 사유지 9,740㎡) • 건축물 : 180동(유허가 95동, 무허가 85동) • 세대수 : 379세대(가옥주 181, 세입자 198)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일부2종미관지구 • 주민동의율 : 토지 87.9%, 건물 81.6%</p> <p>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마포구 신공덕동 2-264번지 일대 국공유지 4,829㎡와 사유지 163필지 9,740㎡ 등 14,569㎡에 새로 신공덕 제3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구역에 정지에는 180필지의 토지가 있으나 20평 전후의 적은 필지들이고 지역내 180동의 건물도 20년 전후의 구식 노후 건물들이 집합되었으나, 지역내에는 차량의 진입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필지들이 적어 재건축에도 적당치 않아, ○지역주민들이 토지는 87.9%, 건물은 81.6%의 동의를 받아 이 지역 일대를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지역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이 구역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p> <p>5. 심사결과 시 지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 <td>의안 번호</td> <td>21</td> </tr> </table> <p>1. 건 명 : 사당 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2. 제안이유 : 사당 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일부해제)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 ○위치: 동작구 사당동 105-14번지 일대</p>	의안 번호	21
의안 번호	19				
의안 번호	21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 적 : 4,763㎡→5,790㎡(증 1,027㎡) • 건축물 : 없음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 지구 <p>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p> <p>○본 재개발구역 변경결정안은 '91.2.11. 구역 지정되었다가 '93.9.25. 구역을 변경하였던 동작구 사당동 105-14번지 일대 사당 제6주택개발구역 지정면적 4,763㎡에 1,027㎡를 추가하여 5,790㎡로 구역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p> <p>○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원인은 이 구역과 인접된 사당 4구역 재개발사업 완료 후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동작구에 무상 귀속되어 기부채납된 공공공지 298㎡를 동작구에서 공용의 청사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 토지가 장방형으로 생겨 청사 신축지 적당치 않아 사당 6구역에서 공용의 청사 부지를 원만하게 확보하도록</p> <p>○동작구 소유인 공공공지를 사당 6구역에 포함하고자 한 것이며, 사업계획 결정시, 이 구역 북측으로 4m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를 이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로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p> <p>○이 구역의 합리적인 토지활용을 위하여 변경안대로 동의 결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p> <p>5. 심사결과</p> <p>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지구(일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람공고 중 의견접수 : 없음 <p>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p> <p>○본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은 강남구 도곡동 산 34-8의 임야 195㎡는 인접 도곡동 산 32-1 등 임야와 연결된 도곡근린공원 시설이었으나 중간으로 6m도로가 관통됨으로써 임야 195㎡는 면적이 너무 좁아 공원기능 유지가 어려워 이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하고,</p> <p>○대신 같은 공원용지에 인접된 도곡동 150번지의 192㎡와 도곡동 151-1의 65㎡ 및 도곡동 191번지 58㎡를 도곡 근린공원에 편입하여 당초 공원시설 249,987㎡를 250,107㎡(120㎡ 증)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p> <p>○도곡 근린공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변경결정안대로 공원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변경결정안에 동의 의견임.</p> <p>5. 심사결과</p> <p>시 의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d style="padding: 2px;">의안 번호</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center;">57</td> </tr> </table>	의안 번호	57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d style="padding: 2px;">의안 번호</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center;">58</td> </tr> </table>	의안 번호	58
의안 번호	57				
의안 번호	58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p>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위치 : 강남구 도곡동 150 일대</p>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 적 : 249,987㎡→250,107㎡(증 120㎡)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p>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위치 : 성북구 정릉동 산 1-2 일대</p>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병설 보건전문대학 : 36,355㎡ - 고려중·고교 : 31,302㎡ • 공람공고 중 의견접수 : 없음 <p>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p> <p>○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은 성북구 정릉동 산 1-2 일대 36,355㎡의 고려대병설 보건전문대학과 같은 지번내에 있는 고려중·고등학교 부지 31,302㎡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로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p> <p>○본 학교 등은 전문대학은 1963년에 교육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고, 중·고</p>				